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9. 2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9월 6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9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9.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행정정보의 공표(안 제6조)
 -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안 제7조)
 -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국민의 열람에 제공
 -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과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영등포구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로 정함.
 - 안 제3조에 “정보”, “공개”, “집행기관”, “총괄부서”, “처리부서”, “청구인”이란 무엇인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함.
 - 안 제5조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개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도록 영등포구의 책무를 명문화 함.
 - 안 제6조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구분되지 않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사업,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제도를 도입 함.
 - 안 제7조에 주요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국민이 열람하도록 명문화 함.
 -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 여부 결정,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 2년,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국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72 호
----------	--------

제출연월일 : 2011.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정보의 공표 (안 제6조)

- 구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안 제7조)

-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비치 및 공개하지 않음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1. 7. 28. ~ 8. 17.)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사무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검토필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구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구(구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에,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다.

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 원칙) 구에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목록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총괄부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주요 정

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국민의 열람에 제공한다.

②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개외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 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방법은 정

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 (공개여부 결정)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즉시 공개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관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제1항의 기한까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즉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2.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비용부담) 행정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인 소속 공무원 4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 13조(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1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회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이 가능하며, 이때 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수당 등)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및 이에 준하는 모든 심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 18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